

## 성장하는 디지털 전자산업에 전략물자관리로 한층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거래 촉진해야

작년 우리나라는 주변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역 7000억불을 달성한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2008년 들어서 글로벌 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수출전선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경제호전이 우리 바람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신용경색 리스크 부각에 따른 경기 둔화,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우리가 수출을 함에 있어 항시 주시하고 경계해야 할 요소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전자산업에서 그 돌파구를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산업은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하리라고 본다. 2007년 11월 전자산업진흥회에서 “2008 디지털 전자산업 경기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관련 업체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81.8%가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의 근거로 신제품 출시와 신 시장 개척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장비 수출도 2007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38.5% 증가한 11.2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의 수치는 정부와 업계의 확고한 노력과 의지가 있기에 올해에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위와 같은 대내외적인 요

건을 살펴보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꾸준히 성장시켜야 하고 그 중심에 전자산업이 많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의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고 안전한 무역을 정립화하기 위해서 준수할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참고 1〉 국제수출통제체제 현황

구 분	바세나르 체제 (WA)	핵공급그룹 (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호주그룹 (AG)
설 립	1996	1978	1987	1985
회원국	40개국	45개국	34개국	41개국
우리나라 가입	1996	1995	2001	1996
통제대상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품목	원자력전용물자 및 이중용도품목	미사일, 무인항공기 및 관련물품	생화학무기 및 관련물품

전략물자란 일반산업용 물자 및 기술로서 재래식 무기 및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반도체장비를 언급하였으니 이를 쉽게 예를 들어 보겠다. 반도체장비 중 리소그래피(lithography)는 일반적으로 민간용도로로서 집적회로를 생산한다. 하지만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미사일 항법장치용 집적회로 생산에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전략물자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모든 리소그래피(lithography)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답은 따져봐야 확인된다. 이는 국제체제에서 전략물자 기술수준을 정해 명시한 통제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그 해당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심성근 원장  
전략물자관리원

사전판정으로 신청되는 품목의 기술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상당한 경지에 이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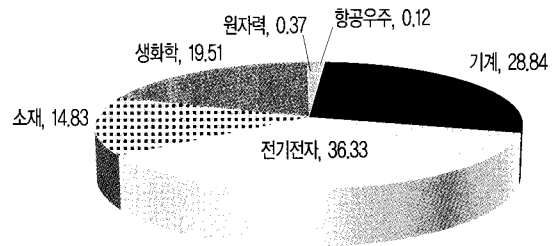
〈참고 2〉 전략물자 주요품목

	WA	NSG	MTCR	AG/CWC/BWC
주요 통제 품목	〈일반산업용물자〉 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센서 및 레이저, 해양기술, 추진장치 등 장비 및 기술	〈원자력 전용물품〉 핵원료물질, 원자로 및 부속장비, 핵연료가공용 품목 등 설계, 건설 기술	완성로켓, 추진체 부품 장비, 계기항법장치, 항공전자, 컴퓨터, 시험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AG〉 화학무기전구체, 제조설비 및 기술, 병원균, 생물학적 병기 (바이러스, 세균 등)
	〈군용물자〉 무기 탄약, 군용차량, 전자장비, 부품	〈일반산업용물자〉 산업용장비 및 소재동위원소분리 장비시험, 측정장비		〈CWC〉 1, 2, 3중 화학물질, 독성화학물질 및 원료

※ CWC: 화학무기금지협약, BWC: 생물무기금지협약

그렇다면 전기전자분야에서의 전략물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업체들은 어떻게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 전에 2007년도 전기전자분야 전략물자 사전판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970건으로 전년대비 약 250% 증가하였다. 2008년 3월 현재까지도 작년 동일 시점과 비교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사전판정 신청 중 전기전자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6.33%에 달하며 이는 다른 분야(기계, 소재, 화학 등)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표1〉참고).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이 전체산업 중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사전판정으로 신청되는 품목의 기술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상당한 경지에 이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전략물자 분야별 처리 현황(2007년 기준, %)



전기전자분야에서 통제하는 전략물자에는 집적회로(IC), 반도체 제조장비, 무선통신장비, 고성능 컴퓨터, 레이저 등이 있다. 이는 일부에 불과하며 전기전자분야와 연관된 전략물자는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의 별표2 중 “3부 전자”, “제4부 컴퓨터”, “제5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제6부 센서 및 레이저” 부분에 그 통제 품목 및 기술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 특성이 있어야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만 반면 우리가 전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품목도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 있기에 기업들은 이를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자사의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해 자가판정이 나 사전판정의 방법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자가판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전략물자는 단순 HSK로 그 해당 여부를 바로 판단 할 수 없다. 다만 품목과 전략물자 통제번호와 관련성을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론적 툴(Tool)에 해당함으로써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기술특성을 파악해 이를 판단해야 한다. 자가판정이 어려운 경우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의

”

지식경제부로부터 자율준수기업으로 인증 받는다면 무역 거래 시 여러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신뢰 할 수 있는 사업파트너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

뢰하면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줌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전략물자에 해당되었을 경우 그 기업은 수출 시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전략물자관리제도 및 허가기관을 정리하면 <표2>, <표3>과 같다.

**<표 2> 전략물자관리제도**

구 분	전략물자관리제도
확인, 신고,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 :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스스로 하는 방법과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 의뢰 방법)</li> <li>• 신고 : 확인결과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할 시 품목별로 최초 1회 신고</li> <li>• 통보 : 전략물자를 거래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품목이 전략물자임을 통보</li> </ul>
수출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의 :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지역구분 없이 허가 신청</li> <li>• 종류 : 개별수출허가(1년), 포괄수출허가(1~3년)</li> </ul>
상환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의 : 전략물자는 아니나 WMD전용 가능품목 중 전용의도를 인지했거나 전용이 의심되는 경우</li> <li>-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절차 등은 수출허가와 동일</li> </ul>
벌칙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확산 목적으로 허가없이 수출/수출허려 한 자 : 징역7년, 5배벌금</li> <li>• 허가없이 수출/수출허려 한 자 : 징역5년, 3배벌금</li> <li>• 확인/신고/통보/서류보관 의무 위반자 : 1천만원이내 과태료</li> <li>• 허가없이 수출, 질서위반자 : 3년이내의 무역제한</li> <li>• 확인의무 위반자 : 과태료 이외에 교육명령 병과</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보관의무 : 확인, 신고, 통보, 각종 허가 관련서류 보관(5년간)</li> <li>• 중개허가 :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할 때 허가신청</li> </ul>

따라서 모든 기업은 전략물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제도준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자율준수기업으로 인증 받는다면 무역 거래 시 여러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신뢰 할 수 있는 사업파트너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이 인증을 받아 자율준수제도를 이행하고 있고, 현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있지만 정부는 점차 중견기업에까지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표 3> 품목별 수출허가 기관**

구 분	허가기관	소관품목	비 고
물 품	지식경제부	일반 산업용 품목	S/W·기술 제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전용품목	
	방위사업청	방산물재(주요방산물자)	
소프트웨어	지식경제부	일반 산업용 품목	-
	교육과학기술부	-	
	방위사업청	방산물재(주요방산물자)	
기 술	지식경제부	전략기술	-
	교육과학기술부	-	
	방위사업청	-	

기업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전략물자에 해당되면 수출이 금지되는 것으로 오인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 인지된 생각이며 전략물자는 수출금지가 아닌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할 뿐이다. 보통 허가 심사 중 수출이 거부된 경우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이른다.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만큼 불확실한 기업경영환경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무역을 지향하여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볼 수 있겠다. 국제사회는 무한히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지만 그 만큼 안보에 있어서는 엄격한 잣대를 내세우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가 전략물자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도를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의 인식전환과 이에 부합하는 꾸준한 실천이 있다면 우리 기업, 나아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수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